



# 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공고

대구광역시청년센터와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청년센터가 직접 개발 및 추진할 수 있도록, 「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공모를 공고하오니 기초지자체 청년센터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4월 4일

대구광역시청년센터장·중앙청년지원센터장

## ◈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
- (주 최)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, (재)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
- (주 관) 대구광역시청년센터
- (사업목적) 청년센터가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・운영하여, 지역 내 청년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
- (사업대상) 관할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※ 청년기본법,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년센터
- (사업기간) 약정체결일~2025.11.
- (지원규모) 6개 규모, 센터 당 최대 10,000,000원 지원 ※최종 선정된 센터는 중앙청년지원센터와의 조율을 통해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(지원방식) 관할 내 기초지자체 청년센터 공모·선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
- (사업내용) 지역 내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, 청년센터가 직접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





- 사업주제: 청년정책 분야별(일자리/주거/교육/복지·문화/참여·권리)로 지역 특성과 청년 욕구에 따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획 가능

#### <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방향성>

- ☑ (청년주도성) 청년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성과 주도성 확보
- ☑ (지속가능성) 장기적인 청년지원사업 모델 구축
- ☑ (확산·제도화) 활발한 사례공유 통해 사업 모델 확산 및 지역사회 제도적 정착에 기여

#### - 추진일정:



# ◆ 주요일정

- (공 고 일) 2025. 4. 4.(금)
- **(접수기간)** 공고일로부터 ~ 4. 11.(금) 23:59
- (서류심사) 2025. 4. 14.(월)
- (면접심사) 2025. 4. 16.(수)
- (선정공고) 2025. 4월 중 예정
- (사업수행) 2025. 5월~ 11월
- (최종결과보고) 2025. 11. 14.(금)





# ◈ 신청방법

- (신청방법) 이메일 접수(dgyc1934@daum.net) \*우편, 방문접수 불가
- (**/ (제출서류)**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지원양식 작성 후 제출

구분	내용		비고
제출 서류	① 신청공문	·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1부[자율양식]	pdf 파일
	② 사업신청서 및 프로그램 계획서	·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1부 [붙임참조] ·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1부 [붙임참조] ※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날인 필수	한글파일, pdf파일 두 가지 버전 압축 후 제출
	③ 증빙자료	<ul> <li>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 1부</li> <li>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 1부</li> <li>지자체 위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(선정공문, 계약서 등) 1부</li> <li>※직영의 경우 제외</li> <li>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 1부</li> <li>개인정보 수집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붙임참조]</li> </ul>	pdf 파일

- 1.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 공문 [자율양식]
- 2. 지역특화 청년사업 신청서 [양식참조]
- 3. 지역특화 청년사업 프로그램 계획서 [양식참조]
- 4. 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
- 5.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6. 지자체 위·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(선정공문, 계약서 등) ※직영의 경우 제외
- 7. 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
- 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양식참조]

# ◈ 기타사항

### □ 신청 제한[선정 배제 및 취소]

- 관련 법령·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는 경우
- 필수서류 누락 및 허위 제출서류인 경우 심사대상 제외·선정취소 가능
- 교부신청 사업내용의 전면적 변경, 규모 축소 시 선정 취소 가능
- 아래의 경우 사업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




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
-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사업비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해당 사업비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사업비를 받은 경우
- 선정기관의 성희롱·성폭력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재단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

### □ 지원 및 선정 시 유의사항

- 관련 법규 및 운영지침 준수
- 승인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영,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협의 후 추진
- 상기 공고 내용은 중앙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 예정

# ◈ 안내 및 문의

○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전략기획팀

TEL. 053-427-1939 / E-mail. dgyc1934@daum.net